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승인 신청

1. 사무안내

상수도 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를 하려고 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와 설계수수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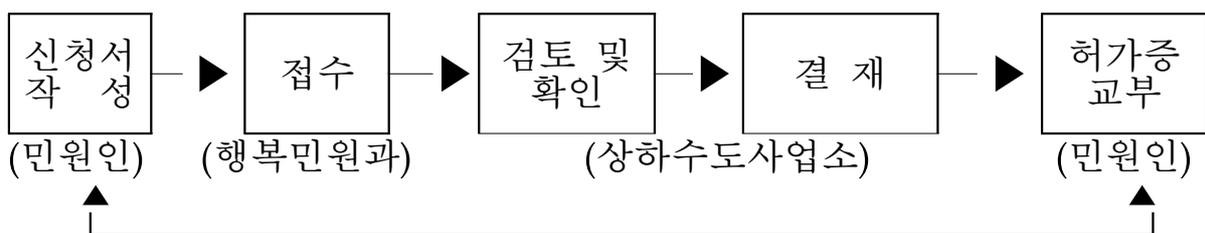
5. 수 수 료 :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1,000원, 40mm 이상 19,000원

6. 구비서류 : 승인신청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주민동의서, 신축건물(건축허가증 사본), 기존건물(건축물관리대장)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화 순 군	5일	상하수도 사업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승인(신규, 개조, 이설) 신청서(제6조 관련)					처리기간												
					5일												
※ 민원인 기재란																	
설치장소																	
성명 (법인대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건축물 (토지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input type="checkbox"/> SMS수신동의													
수수료(수입증지포함)	급수관 구경 32m까지	11,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9,000원												
※ 현장조사 기재란																	
공사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개조 <input type="checkbox"/> 수선 <input type="checkbox"/> 철거	월 소요량	m ³	급수종류	<input type="checkbox"/> 가정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욕탕용 <input type="checkbox"/> 공업용												
배수관구경	mm	배수관관종		급수전구경	mm												
연건축면적		가구수		연장	m												
<p>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일체를 기부 체납 합니다.</p> <p>3.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서명 또는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15%;">주무관</td> <td style="width:15%;">수도행정 팀장</td> <td style="width:15%;">상하수도 사업소장</td> <td style="width:15%;">부군수</td> <td style="width:15%;">군수</td> <td style="width:15%;">공 람</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 결</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주무관	수도행정 팀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부군수	군수	공 람		전 결				
주무관	수도행정 팀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부군수	군수	공 람												
	전 결																
화 순 군 수 귀 하																	
<p>첨부서류 : 신축건물 - 건축허가증 사본, 기존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농 막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내선공사는 수용가에서 공사비를 별도 부담 연결 하여야 합니다.</p>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

1. 사무안내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주민연서로 신청하는 민원으로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여야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대표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의2항, 제9조2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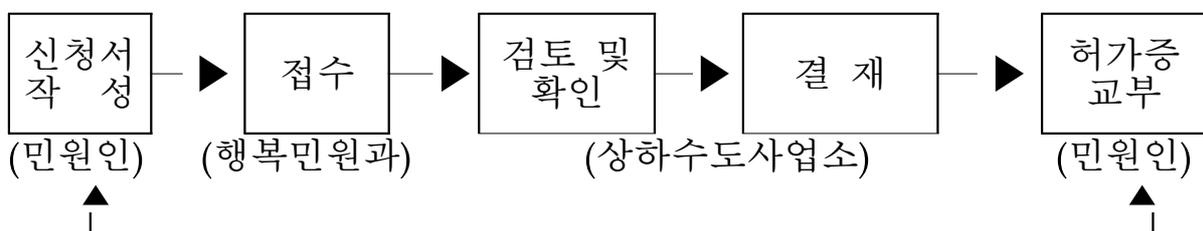
5. 수수료 : 주민부담(별도 산정)

6. 구비서류 : 설치신청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주민동의서,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화순군	5일 이내	상하수도사업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주민연서로 신청합니다. 단,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화 순 군 수 귀 하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1. 사무안내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용 급수장치의 관리인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2. 신청대상자 : 공용급수장치를 관리하고자 하는 주민대표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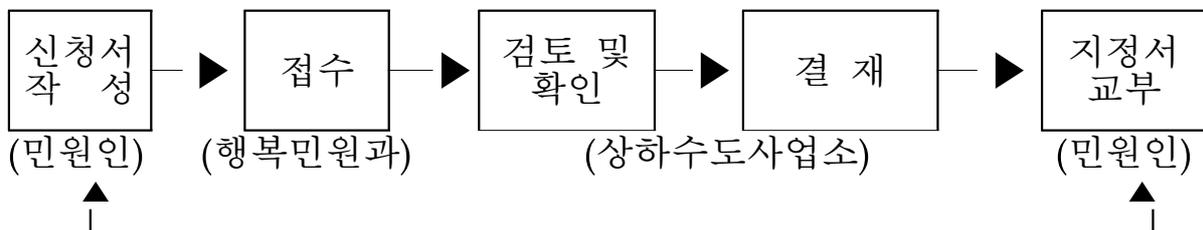
5. 수수료 :

6. 구비서류 : 관리인 지정 신청서, 재정보증서, 관할 읍면장 추천서, 서약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화순군	5일 이내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장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3호서식)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서

관리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남 여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을 지정함.

년 월 일

화 순 군 수

※ 관리인의 준수사항

1. 공용급수장치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반드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급수업종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수도사용가의 요청 및 검침원 검침 시 확인된 사항으로 급수업종을 변경하는 민원으로 변경은 당월부터 적용하나 높은 요율의 업종에서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한 때는 정례 검침일부터 적용한다.

2. 신청대상자 :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하는 수용가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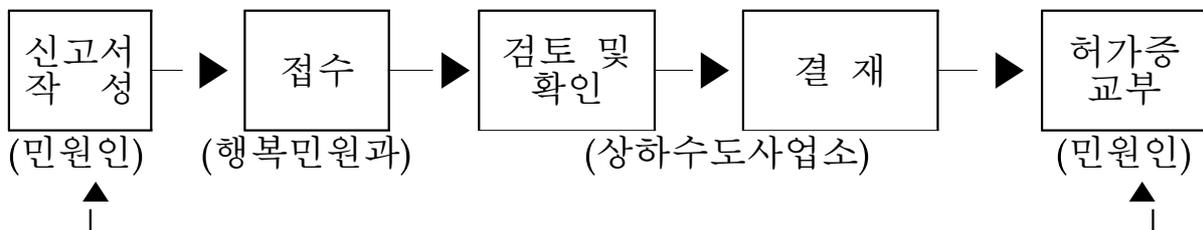
5. 수수료 :

6. 구비서류 :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화순군	2일	상하수도사업소		

8. 민원처리 흐름도



특수가압시설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하며 그 설치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특수가압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특수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청대상자 :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특수가압설치위원회 대표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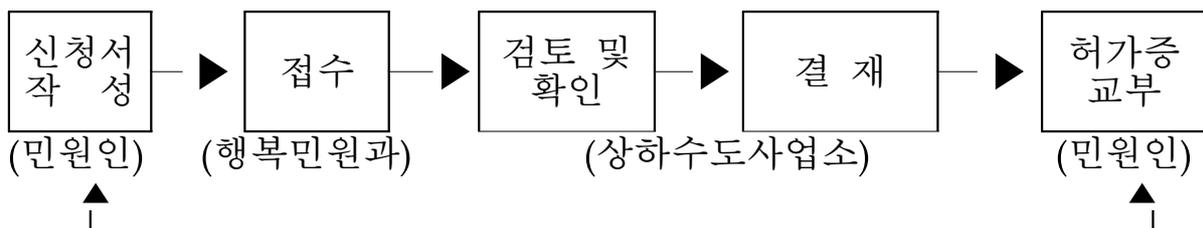
5. 수 수 료 :

6. 구비서류 : 특수가압시설 허가신청서,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운영회 구성 명부, 설계서 및 설계도, 전횡이 연서한 기부체납원 및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그 밖에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화 순 군	5일	상하수도 사업소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5호서식)

특수가압 시설 허가 신청서

수익자 세대주	전수 세대	설치장소 구분	
모타양수 기형명		입구경 (m/m)	
관리방법		출구경 (m/m)	

1. 상기와 같이 특수가압 시설을 하고자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준공과 동시 특수가압 시설 일절을 귀 군에 기부하오니 체납하시고 이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화 순 군 수 귀하

급수장치 폐전 신청

1. 사무안내

수도사용자 등은 이사, 공가 등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필요에 따라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2. 신청대상자 : 수도사용자의 폐전 필요 시 또는 직권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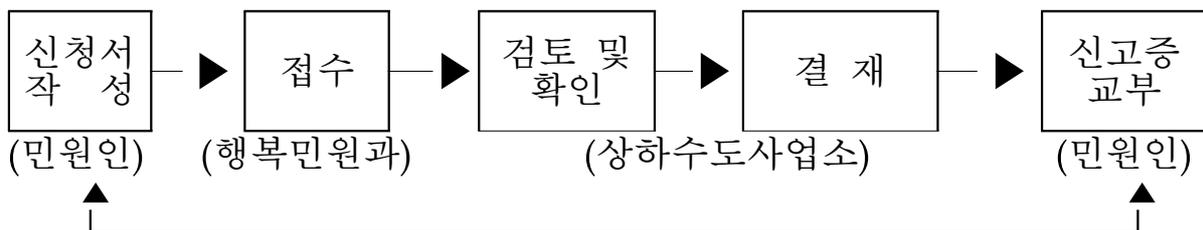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급수장치 폐전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화 순 군	2일	상하수도 사업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급수장치 폐전 신청서

수용가 정 보	수 전 번 호	
	계량기번호	
	소 유 자	
	급수설비 소재지	
	연 락 처	
	업 종	
	계량기구경	D mm
급수설비 폐지사유		
현재 계량기지침		
<p>※ 급수설비 폐전 신청은 미납금과 현재까지 사용하신 요금을 납부하셔야 처리됩니다</p>		
<p>위와 같은 사유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급수설비 폐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동의
	관 계	소유자의
<h3 style="margin: 0;">화 순 군 수 귀 하</h3> <p style="margin: 10px 0 0 0;">접수번호 :</p>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사업자로 주된 영업소를 화순군에 두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하는 자

3. 신청방법 : 모집공고에 의한 신청(만료 1개월전 모집공고)

4. 관련법규 : 화순군 급수공사대행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5. 수수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4. 관련기술자 보유 현황

5.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6. 경영상태 확인서

7. 장비 및 공구보유 현황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화순군	15일	상하수도사업소	-	모집공고 20일

8. 민원처리 흐름도

